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담금 폐지 및 통합 등 부담금 정비〉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37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3
2. 부담금 폐지 관련	11
가. 개요	11
나.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8호)	15
다.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9호)	19

라.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안 별표 제11호)	22
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폐지 (안 별표 제13의2호)	25
바.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폐지(안 별표 제24호)	31
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27호)	38
아.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28호) ..	41
자.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의 통합 (안 별표 제32호)	44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33호)	49
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38호)	52
타.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안 별표 제44호)	55
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안 별표 제53호)	58
하.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72호)	65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75호)	68
너.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78호)	72
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80호)	75
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88호)	81
며. 「해운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안 별표 제91호)	84
3.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 관련	88
가. 개요	88
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삭제 (안 별표 제13호)	89
다.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제외(안 별표 제22호)	92
라.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 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제외 (안 별표 제92호)	95
4. 부담금 통합 관리 관련	102
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 통합 관리 (안 별표 제70호 및 제71호)	10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 출 일 : 2024. 7. 30.

다. 회 부 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5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95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7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8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호)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현행법은 부담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함)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담금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¹⁾

2023년말 기준 부담금 수는 총 91개로 부처별 부담금 수는 아래와 같으며, 2023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23조 2,562억 원으로 전년대비 8,852억 원(4.0%)이 증가하였음.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부처별 운용 부담금 수]

합 계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금융위	농림부 문체부 해수부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고용부 중기부 산림청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원안위
91개	20개	16개	9개	8개	각 7개	각 2개	각 1개

2001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 하면서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도 존속 중인 상황으로 인하여 부담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91개의 부담금 중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부담금 등을 현행법상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사한 부담금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 제출(2024.1.17.)²⁾하였고,

이후 2024년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2126307호)은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3.27.) 주요내용]

- (추진배경) 그간 부담금 정비에도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존속 중
 - 2024년 기준 부담금 91개, 24조원 규모 운용중(GDP 대비 약 1% 수준)
- (기본방향) 부과목적·원칙에 맞지 않거나, 손쉬운 자원 조달을 위해 국민·기업에 부과하던 32개 부담금을 감면·폐지(제21대 국회 기제출한 4개 별도)
 -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 건강·환경,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 정비
 - 그간 90개 내외로 유지 중이던 부담금 수를 69개로 대폭 축소

정비대상	제21대 기제출			
	폐지	감면	관리제외	통합
32개	18개	14개 ※ 12개는 시행령 개정	3개	1개

부처	폐지(18개) / 관리제외(3개) / 통합(1개)	감면(14개)
금융위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관리제외)	
기재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
외교부	■출국납부금	■국제교류기여금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
문체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관리제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출국납부금
산업부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관리제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농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2건 통합)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용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부	■원인자부담금(도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단지) ■시설부담금(물류단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방제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 (주요내용)

①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8개)

- 전력기금 부담금: 약 30% 인하, △0.9조원
-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4천원 인하(1.1→0.7만원), 면제대상 확대(2세→12세 미만)
-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폐지(입장권 가액의 3%)
-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면제
-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 30% 수준 인하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3년 한시 책임보험료 부과율 50% 인하
-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② 기업 경제활동 촉진 :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정비(11개)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0.4조원
- 개발부담금: '24년 한시 감면(수도권 50%, 非수도권 면제), △0.3조원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 중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
-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대상 확대, 연매출 600→1,000억원
-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부과율 인하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부담금(여객운임액의 2.9%) 폐지
- 농지보전부담금: 非 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공시지가30→20%), △0.3조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 확대 등(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 한도 상향(납부액의 60→90%) 등
-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 방제분담금 : 부과율 인하 등

③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 폐지(13개)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수질개선부담금(지자체 수입분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등

정부는 금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를 도입한 이후 최초의 전면적인 정비로서 55개 부담금을 제외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러한 부담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폐지 △0.5조원, 감면 △1.5조원)의 부담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참고) 정비 제외 55개 부담금]

- 정비 제외 사유: ①국민건강·환경보전 등 긍정적 외부효과, ②금융기관 출연금, ③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

구 분	개 수	주 요 부 담 금
제외 부담금	55	
①-1 국민건강·안전 부담금	9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①-2 환경보전 부담금	19	▪배출부과금(환경오염물질) ▪생태계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①-3 농·축·수산업자 지원 부담금	8	▪농·축·수·임산물 수입이익금
② 금융기관 공적기금 출연금	10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③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부합	9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 중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12개 부담금 감면조치는 2024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이후,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개정안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부담금 폐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22대 국회에 현 개정안을 제출(2024.7.30.)하였음.

현 개정안은 91개의 부담금 중

- 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부담금을 별표에서 삭제하고,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 성격의 부담금을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부담금 부과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별개의 부담금들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의 숫자는 현재의 91개에서 69개로 감소하게 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폐지 대상인 18개 부담금의 경우에는 연계되는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별표 □호	부담금명	소관 부처	연계 개정 의안번호
① 부담금 폐지	8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문체부	2285
	9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문체부	2285
	11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산업부	2355
	13의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외교부	2295
	24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기재부	2353
	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환경부	2300
	28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국토부	2289
	32 (74)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 폐지 후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환경부	2302 (2301)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국토부	2276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국토부	2273
	44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해수부	2290
	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문체부	2284
	72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행안부	2352
	7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산업부	2357
	78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국토부	2288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부	2363
	8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수부	2291
	91	「해운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해수부	2299

구분	별표 □호	부담금명	소관 부처	연계 개정 의안번호
② 현행법상 부담금 관리대상 에서 제외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¹⁾	문체부	-
	2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산업부	-
	9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금융위	-
③ 부담금 통합 관리	70 / 7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	환경부	-

1) 별표 제13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0490호, 2024.10.22.)」이 개정되면서 2024.10.22.자로 타법개정되어 별표에서 삭제되었음.

2. 부담금 폐지 관련

가. 개요

개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 개정을 전제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해당 부담금을 삭제하는 내용임.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3.27.)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이 미흡하거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부과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부과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을 기준으로 폐지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상 부담금 폐지 기준]

-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이 미흡하고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부과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부과 실효성이 낮은 경우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여³⁾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부담금운용실태의 점검·평가 등을 위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상술한 부담금 준치 평가의 결과뿐만 아니라,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의 정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⁴⁾, 언론 등 외부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기준을 수립하고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 민관 TF 및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을 거쳐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입장임.

부담금 정비 방안은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함. 그 중 부담금 폐지와 관련된 부분만 보면 아래와 같음.

①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출국납부금, 수산자원조성금 및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

[국민 체감 부담 완화]

별표 □호	소관법률명	부담금	현황	소관 부처	경감액 (억원)*	기대효과
13의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출국 납부금	국내 공항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 부과	외교부	△410	출국당 1,000원 경감
44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 조성금	어업·양식업 면허· 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에게 부과	해수부	△8	영세 어민 부담 완화
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입장권 부과금	영화입장권 가액의 3% 관람객에게 부과	문체부	△294	영화 1회 관람시 500원 경감 (관람료 15,000원 기준)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4)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2002헌가2, 2003.12.18.)

②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학교용지부담금 및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

[기업 경제활동 촉진]

별표 □호	소관법률명	부담금	현황	소관 부처	경감액 (억원)*	기대효과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부담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용토지 분양하는 자에게 분양가 0.8% (단독주택 1.4%) 부과	교육부	△3,598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 유도
91	해운법	운항 관리자 비용 부담금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 (여객운임액 2.9%)	해수부	△53	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③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을 폐지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별표 □호	소관법률명	부담금	현황	소관 부처	경감액 (억원)*	폐지사유
8	관광진흥법	관광지등 이용자 분담금	지원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보수 비용	문체부	△29	부담금 성격 미부합
9	관광진흥법	관광지등 원인자 부담금	용을 입주자 및 공사 원인자에게 부과	문체부	-	부담금 성격 미부합
11	광업법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광물 수입·판매자에게 부과	산업부	-	부과실적 없음

별표 □호	소관법률명	부담금	현황	소관 부처	경감액 (억원)*	폐지사유
24	담배사업법	연초경작 지원 출연금	국내 담배 제조업 자에게 부과 (20개비당 5원)	기재부	△153	당초 부담금 부과목적 달성
27	댐건설·관 리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수익자부 담금	댐 건설비용 일부 를 하류 수력발전 사업자에 부과	환경부	-	부과실적 없음
28	도로법	도로법 원인자 부담금	타 공사 또는 행 위로 인한 도로공 사 비용 부과	국토부	△0.2	부과실적 미흡, 부과 실효성 낮음
32 (74)	먹는물관리 법	수질개선 부담금	먹는샘물등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과 (2,200원/㎥)	환경부	△63	지하수이용부담 금과 부과목적·사용용 도 유사(통합)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 부담금	기존 건축물 소유 자에게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과	국토부	-	부과실적 미흡, 부과 실효성 낮음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 부담금	기존 건축물 소유 자에게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과	국토부	△0.9	부과실적 미흡, 부과 실효성 낮음
72	지방자치법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공공시설 설치로 이익을 받는 주민에게 부과	행안부	△0.1	부과실적 미흡, 부과 실효성 낮음
75	집단에너지사 업법	집단 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과	산업부	-	부담금 성격 미부합 * 민간사업자간 계약
78	택지개발촉 진법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기존 건축물 소유 자에게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과	국토부	△0.4	부과실적 미흡, 부과 실효성 낮음
88	해양심층수 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과	해수부	-	부과실적 없음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이하 조문별로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나.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폐지(안 별표 제8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64조⁵⁾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이하 “관광지등 이용자 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관광지등 이용자 부담금은 관광지등의 지원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지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관광지등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주(입주자)에게 관광지 지원시설⁶⁾ 등의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납부대상자별 부과금액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있음.⁷⁾

5) 「관광진흥법」 제64조(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관광지등 이용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43	4	39	33	4	34
금액 (백만원)	2,340	2,067	2,932	2,287	2,016	2,853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3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동 부담금은 부과목적이 유효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나, 이용자와의 협의로 산정한다는 부과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관광지등 이용자 부담금의 부과방식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부과·징수 주체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액을 정하는 것이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3조(이용자 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5조(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 현황, 부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부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보수 비용의 부담 및 사용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분담금을 산정하는 구조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 계약 관계에 가깝다는 점에서 부담금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어 보임.

이와 같이 관광지등 이용자 부담금은 그 성격이 부담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모호하므로 현행법에 따른 부담금 관리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동 부담금을 삭제하여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64조를 개정하여 관광지등 이용자 부담금 및 관광지등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고,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경우 현재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분담하는 내용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부담금 관련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64조(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8.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별표 <삭 제>

다.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9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64조⁸⁾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이하 “관광지등 원인자 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관광지등 원인자 부담금은 관광지등의 지원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지등의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에게 관광지 지원시설 등의 건설비용 등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은 2014년 이후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음.

[최근 3년간 관광지등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	-	-	-	-	-
금액 (백만원)	-	-	-	-	-	-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8) 「관광진흥법」 제64조(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3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동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나,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2014년부터 10년간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어 존치 필요성이 약화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동 부담금의 납부대상자별 부과금액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지등 이용자 분담금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있는 만큼⁹⁾, 사적 계약 관계에 가깝다는 점에서 부담금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어 보임.

이와 같이 관광지등 원인자 부담금은 원인자 및 사업시행자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사항으로 부담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최근 10년간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어 부담금 제도를 존치시킬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역시 유사한 평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3조(이용자 분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원인자 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분담금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의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9.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도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삭 제>

라.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안 별표 제11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삭 제>

개정안은 「광업법」 제87조¹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이하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으로,

1994년 「광업법」 개정을 통하여 부담금을 신설한 이후 부과 및 징수실적이 전무함.

10) 「광업법」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유통·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삭제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최근 3년간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	-	-	-	-	-
금액 (백만원)	-	-	-	-	-	-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이와 같이 부담금의 부과·징수내역이 전무한 것은 「광업법」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원가상승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하위법령(「광업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서 부과대상,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가산금 및 강제징수절차,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에 기인함.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관련 변천현황]

연도	내용
1994	- 에특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원으로 부과금 제도 신설 - 원가상승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국내 업계 반발 등으로 미징수 (하위법령(시행령) 미개정)
2009	- 부과금 폐지 개정안 제출 → 현행유지 결정(지경위)
2012	- 부과금 징수 의무화 개정안 발의 → 임기만료폐기
2016	- 부과금 징수 의무화 및 부과금액 범위 규정 개정안 발의 → 임기만료폐기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의안정보시스템 내용 재구성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3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동 부담금 부과를 위한 하위법령이

부재하고 199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실적이 전무하며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부담금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이와 같이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은 제도 도입 이후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고, 단 한번도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금 제도를 존치시킬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역시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의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11.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삭 제>

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폐지
(안 별표 제13의2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삭제>

개정안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11)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출국납부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내·외국인 공통)에게 국제선 항공권 1매당 1천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출국납부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382,161	8,420,036	30,914,360	1,349,428	6,697,221	29,382,568
금액 (백만원)	1,382	8,420	30,914	1,349	6,697	29,383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항공기 좌석 등급에 구분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좌석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출국납부금 징수건수 및 금액은 2019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2021년도에 급감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¹²⁾

정부는 출국납부금의 폐지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의 측면에서는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동 출국납부금과 유사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¹³⁾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46조제3항¹⁴⁾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12) 징수액 기준 '18년 392억원, '19년 410억원, '20년 95억원, '21년 13억원, '22년 67억원, '23년 294억원

1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4) 「제주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을 통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감면하였음.

[외교부 및 문체부의 출국납부금 정비(안) 개요]

부담금 구분		정비내용	경감액 (억원)*	정비 방법	기대효과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1천원 납부 → 폐지	△410	법 개정사항	(예)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제주특별법	납부액 인하(1→0.7만원) 및 면제대상 확대 (2→12세 미만)	△1,344	시행령 개정사항 (완료)	부부의 경우 출국당 4.4만원→1.4만원 (3만원 경감)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따라서,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국제선 항공권 1매당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폐지한다면, 성인의 경우 1매당 4천원, 12세 미만 자녀는 1매당 1만 1천원이 감면되는 등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의 경우 총 3만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은 2021년도 부담금평가에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전염병의 전파라는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 전파에 대하여 일종의 원인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 부과는 타당성을 가진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출국납부금을 폐지하는 경우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

제질병퇴치기금의 운영이 어렵게 되어,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도 함께 발의하였음.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을 통해 도입·운영되는 기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수입 및 지출규모는 416억원이며, 이 중 부담금에 의한 수입이 29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국제질병퇴치기금 개요(「국제질병퇴치기금법」)]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제3조제1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 (제3조제2항)	- 정부출연금 -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출국납부금) - 기금운용수익금 -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의 용도 (제4조)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주요사업	- 글로벌사업: 보건 분야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통해 우리 국제위상에 걸맞은 기여 및 국제 보건안보 논의에 선도적 참여 및 우리 기업 조달에 유리한 환경 조성('23년 232억원) * 글로벌펀드(Global Fund),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 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 소아마비 근절 이니셔티브(GPEI) 등 - 국제기구협력사업: 보건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감염병 관리체계 및 보건인력 역량강화, 결핵·HIV/AIDS·콜레라 등 주요 감염병 예방 및 퇴치 사업 발굴 및 수행('23년 113억원) - 민관협력사업: 현장 전문성을 가진 NGO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 및 퇴치에 기여('23년 0.92억원)

「국가재정법」 제82조¹⁵⁾에 따른 2024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존치의 타당성에 대해 ‘폐지’로 평가하면서 “국제이동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퇴치 지원은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사업의 자체 국가 차원의 운영은 바람직하나, 기금의 주된 재원인 부담금의 폐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 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소관부처인 외교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범정부적 부담금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출국납부금 폐지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기존의 기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수행할 계획임.

한편, 개정안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법률안」(의안번호 제2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15)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13의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u> <u>제1항에 따른 납부금</u>	별표 <u><삭 제></u>

바.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폐지(안 별표 제24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삭 제>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제25조의3(16)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이하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은 영농기술 개발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여 국내 연초생산 기반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 담배 제조업자에게 비용(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담배 중 쉼련 20개비당 5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 16)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쉼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쉼련(「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개비당 5원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36	36	36	36	36	36
금액 (백만원)	14,283	14,165	13,678	14,283	14,165	13,678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동 부담금은 2001년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제가 폐지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으로 귀속되며, 동 재단은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연초생산안정화를 위하여 품질향상 및 지력증진사업, 생산기반구축사업, 연구개발사업, 경작자단체지원사업, 재해보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은 국내 담배제조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연초생산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임.

다만, 2001년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을 신설하고 2002년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을 설립하여 연초 농가 보호와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전자담배·액상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등장하는 등 담배 시장이 변화되었고 연초생산규모 및 농가 수는 감소¹⁷⁾하는

17) 연초생산규모 및 농가 수: ('19년) 10,215톤, 2,880개 → ('23년) 6,239톤, 2,384개

등의 변화가 있었음. 또한, 그동안 조성된 연초생산안정화재단 기본재산(2024년 현재기준 5,515억원)의 자산운용수입¹⁸⁾만으로도 사업비 재원 조달이 가능한 상황¹⁹⁾이 되면서,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제도를 신설할 당시의 부과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연도별 연초생산안정화기금 기본재산 운용 실적 및 지출 총액]

(단위: 억원)

항목		‘20	‘21	‘22	‘23	‘24e
수입	기본재산 운용수입	207.5	184.4	233.6	304.8	282.4
	출연금	146.8	142.8	141.7	136.8	153.0
	KT&G 후원금	4.0	4.0	(4.8)*	(5.2)*	(4.2)*
	총계	358.3	331.2	375.3	441.6	435.4
지출	지원사업비	217.7	211.4	254.6	214.3	243.8
	재단운영비	13.2	13.1	13.5	13.7	16.3
	여유재원**	127.4	106.7	107.2	213.6	175.3
	총계	358.3	331.2	375.3	441.6	435.4
기금 기본재산 규모		4,912.3	5019.0	5,126.2	5,339.8	5,515.1

* ()는 KT&G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여 농가에 직접 지원한 금액

** 재단 정관에 따라 수입과 지출 차액인 여유재원은 기금 기본재산에 편입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연초경작농가 수가 감소하는 등 공익사업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제도 도입 당시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여 제도를 존치시킬 실효성이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8) '25년 예산 및 '24~'28 중기 자산운용 목표수익률(잠정) : 5%

19) 최근 5년간 180~300억원 수준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100~200억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금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2021년도 부담금평가에서도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부담금 부과대상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이 있으나, 자산운용수입 및 기타수입으로도 연초경작지원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담금에 의존하는 비율을 감소시켜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한편,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및 연계 개정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담배 제조업자의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 개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호)은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폐지분인 궤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 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12호)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²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 함)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

20)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궤련: 20개비당 841원 (이하 생략)

에게 비용(궐련의 경우 궐련 20개비당 841원²¹⁾)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귀속됨. 동 기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과 같은 국민건강관리사업 등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²²⁾을 수행함.

즉, 동 부담금 개정안 및 이와 연계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실상 궐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궐련 20개비당 5원)은 그대로이며 부과·징수한 부담금의 귀속 및 사용 용도만 변경되는 상황임.

[담배 관련 부담금 개정안 요약]

구분	현행	개정 후
제조업자 부담금 부과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 20개비당 <u>5원</u>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20개비당 841원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 폐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20개비당 841원 + <u>5원</u> = 846원*
부담금 귀속 및 사용	○연초생산안정화재단 : 연초생산안정화를 위하여 품질향 상 및 지력증진사업, 생산기반구축 사업, 연구개발사업, 경작자단체지 원사업, 재해보상사업 등 수행	○국민건강증진기금 :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과 같은 국민 건강관리사업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20개비당 841원임

21)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의 경우와 다르게 궐련 외에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썬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은 담배 등에도 부과함

22)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연초경작을 지원하여 국내 연초생산기반을 안정화하는 목적도 타당하지만, 현재까지 기 조성된 연초생산안정화재단 기본재산의 운용을 통해서도 해당 공익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서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을 폐지하는 경우 연초생산안정화재단으로 배분되던 연 153억원 수준의 재원(2024년 계획 기준)이 미징수 될 예정이므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기 조성된 기금의 기본재산의 자산 운용 수익률 제고를 통하여 연초경작농가 지원사업을 기존 수준으로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분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는 안정적으로 경작자 지원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면 부담금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는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타 부담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안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24.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엽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삭 제>

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27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
건설관리법”이라 함)」 제23조²³⁾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이하 “댐건설 수
익자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
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댐건설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 건설에 필요한 국가재정 지출을 절
감하기 위하여 다목적댐 건설 완료 고시 당시 다목적댐 하류 수력발전
사업자에게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예상 증가수익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1999년 「댐건설관리법」 제정을 통하여 부담금을 신설한 이후 부
과 및 징수실적이 전무함.

23) 「댐건설관리법」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
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
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
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부과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댐건설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	-	-	-	-	-
금액 (백만원)	-	-	-	-	-	-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3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부담금 준치를 권고하였으나, 2019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목적의 유효성은 있으나 설치된 후 실행된 사례가 없었으며 향후 국가주도의 대형 댐 건설계획이 없는 상황으로서 현행 조항 유지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담금 준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댐건설 수익자부담금은 제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어 부담금 제도를 준치시킬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 익자부담금</u>	별표 <u><삭 제></u>

아.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폐지
(안 별표 제28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삭제>

개정안은 「도로법」 제91조²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하 “도로법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도로법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 24)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도로법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3	15	10	7	17	7
금액 (백만원)	32	75	29	22	77	21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2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동 부담금은 부과·징수 금액이 적어서 부담금으로써 유용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부담금 부과 자체는 타당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삭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법 원인자부담금은 징수 실적이 미미하고,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 실효성이 낮으며,

또한 타공사 시행자 및 타행위자 대부분 도로를 직접 원상복구 하고 있어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도로법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실적이 미미하고, 「도로법」의 다른 규정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부담금의 관리·운용을 통해 공정성·투명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28.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 자 부담금	<삭 제>

자.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의 통합
(안 별표 제32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²⁵⁾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수질개선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되, 기존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는 「지하수법」 제30조의3²⁶⁾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으로 이전·통합하려는 것임.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자 및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 및 기타샘물 개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

25) 「먹는물관리법」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6)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양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질개선 부담금	건수	589	518	522	348	350	319
	금액 (백만원)	20,053	20,838	19,848	14,819	15,672	15,351
지하수 이용부담금	건수	297,472	290,392	281,295	268,742	256,585	246,394
	금액 (백만원)	11,865	11,836	11,938	11,555	11,549	11,536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40%가 귀속되며, 20%는 부과·징수를 위임받은 시·도에, 40%는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구²⁷⁾에 지급함. 즉, 현재 취수(수입)량(m³) 당 2,200원을 징수하여 환경부 880원, 시·도 440원, 시·군·구 880원으로 분배되고 있음.

27) 「먹는물관리법」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비교]

구분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지하수법」 제30조의3
도입시기	시행일(1995. 5. 1.)	시행일(2005. 12. 1.)
부과목적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원 조성
부과대상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자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 및 기타샘물 개발자	「지하수법」제7조,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금액산출 방법	취수량 또는 수입량(㎥) x 2,200원/㎥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귀속	국가(환경개선특별회계) 100% -세입조치후 환경부세출(40%), 지자체(20%+40%=60%)	기초자치단체 1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3.7%, 일반회계 36.3%) * 2023년 기준
사용 용도	1.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2.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비용의 지원 3.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의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에 대한 지원	1.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5.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차입금의 상환 8.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개정안은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되, 수질개선부담금 수입의 환경 개선특별회계 귀속분(40%) 외에 지자체 교부분(60%)은 부과 목적 및 사용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이전·통합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재원으로써 지하수 활용·보전 등의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정부는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지하수 자원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부담금을 정비하려는 것임.

각각 관리하던 부담금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 부담금 운영상으로도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보임.

따라서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에의 통합을 전제로 수질개선부담금을 삭제하는 동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2023년도 부담금평가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유사하나, 먹는샘물 및 수입샘물 등 부과대상 등이 상이하여 중복·유사성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여 타당하나 전반적인 제도와 부담금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부과기준, 감면조항 등을 상위법령으로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조건부로 부담금의 존치를 권고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안에 대하여 통합하지 않아도 되나, 기획재정부 등의 부담금 개편 방향이 이러하면 이견 없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2호) 및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u>수질개선부담금</u>	별표 <u><삭 제></u>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33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44조²⁸⁾에 따른 시설부담금(이하 “물류시설 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물류시설 부담금은 물류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나 기존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시설 내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1996년 제도 시행 이후 2016년도에 5,900만원을 부과·징수한 외에는 실적이 전무하며²⁹⁾, 2024년도에도 별도의 부과·징수 계획이 없음.

28) 「물류시설법」 제42조(시설의 존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물류시설법」 제44조(시설부담금)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9) 참고로, 2017년 10월 「물류시설법」의 개정 전에는 존치시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도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었으며, 2016년 건은 피분양자에게 2건(5,900만원)이 부과된 건임. 이후 부담금의 이중부과 문제로 2017년 피분양자는 시설부담금

[최근 3년간 물류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	-	-	-	-	-
금액 (백만원)	-	-	-	-	-	-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한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은 2022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물류시설 부담금은 수익자 원칙에 부합하고 부과대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그러나, 동 부담금은 제도 도입 이후 부과 및 징수실적이 거의 없어 부담금 제도를 존치시킬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되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별표 <삭 제>

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38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3조³⁰⁾에 따른 시설부담금(이하 “산업시설 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산업시설 부담금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존치 시설물(기존 공장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2024년도에는 8,9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임.

30) 「산업입지법」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산업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2	2	-	1	-	1
금액 (백만원)	227	1,959	-	80	-	1,875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정부는 동 부담금은 부과 및 징수실적이 미흡하여 부담금 제도를 존치시킬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실효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된다는 정책적 필요성의 측면에서는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은 2022년도 부담금평가에서 산업시설 부담금은 수익자 원칙에 부합하고 부과대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동 부담금의 징수 실적이 최근 3년간 총 19억원 정도로서 부과실적이 미흡하다고 보기에선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토교통부는 최근 징수액 현황을 보면 부과·징수 금액이 커보일 순 있으나, 이는 대규모 건물이 존치하는 최근 일부 단지의 개별적 사례³¹⁾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며, 부담금

개편의 취지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개발 촉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삭 제>

31) 2023년에 징수한 용인 일반산업단지(테크노밸리)(18.8억원)의 경우 대규모 GS기업연구소가 존재하고, 해당 시설물 존치에 따라 부담금 금액이 큰 상황

타.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안 별표 제44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삭 제>

개정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³²⁾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수산자원조성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

32)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수산자원조성금은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설치, 수산종자 방류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 등에게 비용³³⁾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은 각 지자체로 귀속³⁴⁾되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됨.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102	2,150	5,024	1,087	2,104	4,754
금액 (백만원)	647	1,101	766	635	1,084	737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정부는 수산자원조성금의 폐지 필요성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대상이 대부분 영세 어민이라는 점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영세한 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의 측면에서는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33) 패류·어류 양식업: ha(헥타르)당 10만 원,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ha(헥타르)당 500만 원 등

34) 2023년도 기준 광역자치단체 27.5%, 기초자치단체 72.5%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은 2022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동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금으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만큼,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인자이자 수혜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44.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삭 제>

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안 별표 제53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삭 제>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25조의2³⁵⁾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입장권 부과금은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납부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수납하여 납부)에게 입장권 가액³⁶⁾의 3%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³⁷⁾

35)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6) 영화관 3사의 티켓값(성인, 2D영화 기준) 평일 기준 1만4,000원, 금요일 포함 주말 1만5,000원

37) 2019년까지는 연 5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징수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영화관람객 감소 및 감액·면제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음.

※ 징수액 기준 변동현황(단위: 백만원)

[최근 3년간 입장권 부과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9,232	15,061	21,737	18,685	15,050	21,645
금액 (백만원)	17,087	17,961	26,368	17,086	17,948	26,255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동 부담금은 「영화비디오법」상 영화발전기금으로 귀속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영상문화 및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7년 신설된 기금임.³⁸⁾

[영화발전기금 개요(「영화비디오법」)]

구분	내용
기금의 설치 (제23조제1항)	·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 (제24조)	· 정부출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입장권 부과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제25조제1항)	·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징수액	49,900	51,978	54,582	10,522	17,086	17,948	26,255

38) 「영화비디오법」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영화비디오법」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구 분	내 용
	·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2023회계연도 영화발전기금 수입·지출결산]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구 분	계획액	계 획 현 액	지출액
합 계	2,300	1,672	1,671	합 계	2,300	2,307	1,671
○재산수입	36	23	23	○사 업 비	729	736	696
○경상이전수입	539	271	270	- 영화제작지원	233	255	252
- 가산금	0.1	0.2	0.1	- 영화유통지원	205	207	197
- <u>입장권 부과금</u>	524	264	263	- 영화정책지원	176	175	155
- 기타경상이전수입	14	7	7	- 첨단영화기술육성	27	27	26
○잡수입	31	5	5	- 기획개발지원	70	54	48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94	573	573	-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18	19	19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00	800	800	○기금관리비	121	121	120
				○기금간거래	810	810	810
				○여유자금 운용	639	639	4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라는 재정 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특수한 공적 과제의 성격을 지니며, 영화관람객은 영화예술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은 궁극적 이익이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영화상영관 관람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³⁹⁾

그러나, 부과금 부담주체인 영화관람객은 영화산업 진흥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원인제공자 혹은 직접 수혜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과금 부담자와 부담금 수혜자간 직접적 연계성이 낮으므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에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2007헌마860)은 영화관람객에 대한 부과금 부과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나,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이었고,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결론적으로 기각을 결정한 바 있음.⁴⁰⁾

39) 2023년도 부담금평가보고서, p.70

40)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4(기각): 5(위헌)의 의견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법률의 위헌선언을 위한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하였음.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가.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영화예술의 진흥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위한 것이다. 이는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이며, 영화관 관람객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집단이다. 즉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예술의 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객관적 근접성이 있으며,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을 통한 영화의 장기적인 발전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도 2023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부담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금 부담자와 부담금 수혜자간 직접 연계성이 낮으므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권고하였음. 또한,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OTT 기업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국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한 사례를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음.

게 돌아가게 되어 그 집단적 책임성 및 효용성도 인정된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징수의 타당성과 적정성은 지속적인 입법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영화관 관람객을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또한 그 액수가 소액이고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의 본래적·전형적 소비자라는 점에서, 또한 영화관 경영자는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과 가까이 있으므로 그 징수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른 문화생활 영위자 및 다른 문화산업 종사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이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그 부과를 통해 추구하는 영화예술의 진흥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이다.

그러나 대중문화인 영화의 관람은 우연한 사정일 뿐 그 관람객이 역사적·사회적·법적으로 동질성 있는 특정 집단은 아니며, 영화는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므로 일반국민 중에서 일시적인 관람객을 영화예술의 진흥에 더 근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아니므로 영화관 관람객을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현재의 납부의무자와 집단적 동질성이 없는 장래의 관람객에게 기대되는 간접적 이익만으로 집단적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산업의 발전 등 특수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며, 부과금의 징수 및 집행 과정에 입법자의 통제가 있다는 점은 납부의무자의 선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결국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아 영화예술의 진흥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과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들을 영화 이외의 다른 문화생활의 영위자 및 다른 문화산업의 종사자와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부는 입장권 부과금 폐지 필요성에 대하여 입장권 부과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통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의 측면에서는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보듯이 입장권 부과금이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음. 그리고, 현실적으로 입장객이 부과금이 포함된 입장권 가격을 영화상영관에 지불하고 이를 수납한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장권 부과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으므로,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그 효과가 입장권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영화상영관 측의 부담만을 완화해주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⁴¹⁾

또한, 영화발전기금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 시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이라는 기

41) 특히, 영화상영관 업계는 최근의 물가 상승률과 각종 부대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영화부과금을 폐지하더라도 영화 관람료를 현재 수준보다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뉴스토마토, “영화발전기금 부과 폐지해도…상영업계 “관람료 인하 없다” 반발”(2024.4.1.) 기사 등)

존의 공익 목적을 위한 사업의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한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53. 「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u> 」 제25조의2에 따른 <u>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u>	<u><삭 제></u>

하.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폐지(안 별표 제72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삭 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8조⁴²⁾⁴³⁾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이하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42) 기존에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현행 제155조에 규정되어 있음.

43) 「지방자치법」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5	3	1	5	3	1
금액 (백만원)	9	10	5	9	10	5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동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문제(예: 「수도법」 제71조⁴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부과·징수 실적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동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5개 지자체⁴⁵⁾에 부담금 근거 조례가 있으나 부과 실적이 거의 없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2021년도 부담금평가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부과·징수의 논리성은 있으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부과·징수 실적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⁴⁶⁾ 부담금으로서의 실효성은 낮다는 점에서 부담금을 존

44)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5) 강원 원주시·태백시(농공·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부담금), 경북 김천시(치수산업 부담금), 전남 장흥군(시장 시설 부담금), 서울 노원구(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음.

동 부담금 최근 부과 실적이 연 1,000만원 수준으로 미미하여 부담금 제도를 존치시킬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고,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역시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동 부담금의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72.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삭 제>

46)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수도 시설 설치와 관련된 수익자 부담금을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전환하였음.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75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⁴⁷⁾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이하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은 사용자가 난방설비 건설비용을 부담하
고 있는 타 난방방식(중앙난방·개별난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집단에너지(지역난방)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건물 소유주에게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2,134	2,132	1,543	2,150	2,152	1,571
금액 (백만원)	237,297	251,098	181,348	241,968	246,812	188,766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4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
는 시설을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동 부담금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해당 시설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기업과 민간으로 다변화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시설 건설·설치비용을 징수하는 영리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간 계약을 통한 비용 분담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는 부담금이 지자체나 공사뿐만 아닌 민간기업으로도 다수 귀속된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음.

[2023년도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 귀속주체별 배분현황]

구분	배분비율 (%)	구분	배분비율 (%)	구분	배분비율 (%)
서울에너지공사	4.87	나래에너지서비스	6.03	휴세스	4.33
부산광역시	0.16	수완에너지	0.56	부산도시가스	2.17
한국지역난방공사	34.19	대륜발전	6.85	부산정관에너지	0.01
한국토지주택공사	3.67	대구그린파워	0.19	삼천리	0.73
GS파워	8.40	내포그린에너지	2.29	디에스파워	2.93
안산도시개발	2.43	춘천에너지	0.15	대전열병합발전	0.19
인천공항에너지	0.10	한국씨이에스	2.81	석문에너지	0.31
위드인천에너지	0.43	청라에너지	6.76	합계 100%	
인천종합에너지	7.10	평택에너지서비스	2.33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도 2023년도 부담금평가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사업이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으로 변화되고 민간기업이 영리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비용

을 징수하는 사업을 부담금의 형태로 재정 당국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에서, 부담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당 금액의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이처럼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은 사업자와 사용자 간 계약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사항으로 부담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도 이와 유사한 평가를 하였다는 점에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18조를 삭제하여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사업자-사용자 간 계약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부담금 관련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 기준,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7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별표 <삭 제>

너.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78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⁴⁸⁾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존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그 이전에도 2019년의 경우 6백만원을 징수했으며 2020년에는 징수액이 없는 등 부과·징수 실적이 미미한 편임.

48)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2	1	-	2	1	-
금액 (백만원)	125	56	-	384	56	-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택지개발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 또는 민원으로 인한 납부지연 등으로 부과 시점과 징수 시점에 차이가 있음

한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은 2022년도 부담금평가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수익자 원칙에 부합하고 부과기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그러나 동 부담금은 징수실적이 미미하여 부담금 제도를 존치시킬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78.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u>	별표 <u><삭 제></u>

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80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49)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이하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 확보(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 증축)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분양가격에 비례한 일정비용(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49) 「학교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학교용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7,066	6,797	7,658	7,196	6,501	7,900
금액 (백만원)	487,716	303,134	247,455	466,116	271,253	221,988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우선,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정비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최근 원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될 경우 주택가격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⁵⁰⁾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⁵¹⁾ 등에 따라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

50) 초·중고 학생 수: 709만명('11년) → 617만명('15년) → 554만명('19년) → 534만명('23년)

51) 「학교용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따른 처분취소소송 등 관련 소송이 다수 발생하는 중인데⁵²⁾ 부담금 폐지 시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개발사업자는 분양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개발사업의 일차적인 수혜자라 할 수 있고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학교 신설 수요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수익 일부를 학교 신설을 위해 납부하는 것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임.⁵³⁾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도 2021년도 부담금평가에서 개발사업자는 분양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개발사업의 일차적인 수혜자라 할 수 있고 개발사업은 학교 신설 수요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 등 주택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한 바 있음.

또한, 분양가격의 0.8%(단독주택의 경우 1.4%)에 불과한 학교용지부

52) 최근 5년간(2019~2023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 총 134건(소송물가액 총 1,385억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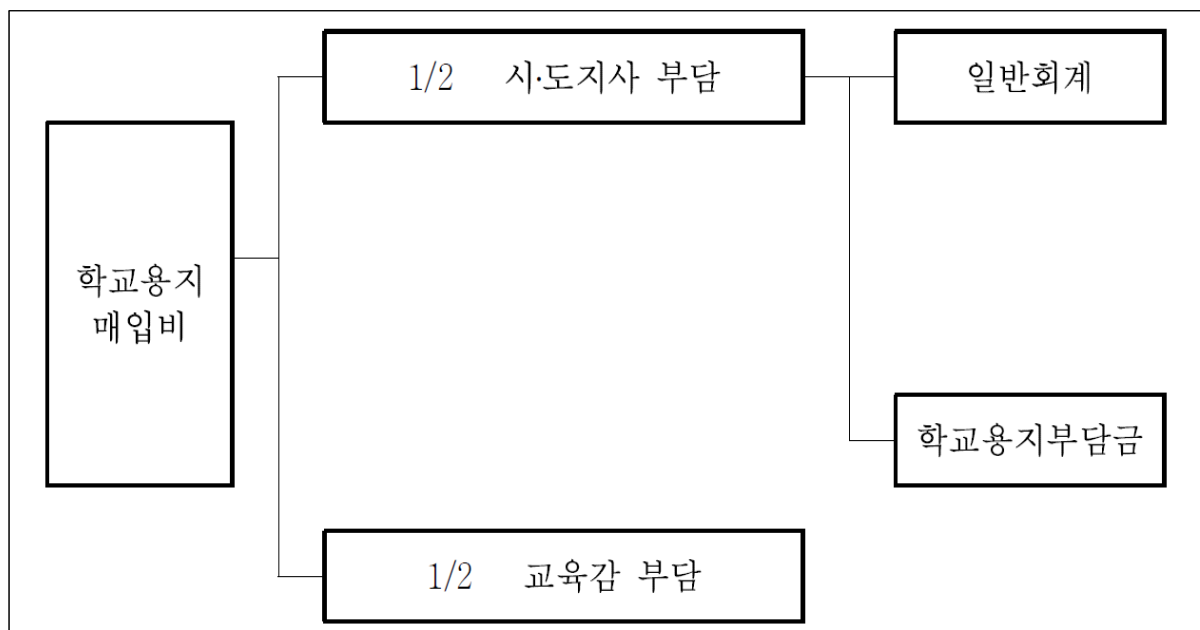
53) 1996년 부담금 도입당시에는 분양받는 입주자에게 부과되었으나, 현재 2005.3.31. 2003헌가20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5년부터는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납부의무자가 변경되었음.

담금 폐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담금 폐지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으로 배분되던 연 3,598억원 수준의 재원(2024년 계획 기준)이 미징수 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학교용지법」 제4조⁵⁴⁾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법」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함.

[학교용지매입비 재원 구조]



54) 「학교용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 부담금과 연계 개정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 현행 제4조를 개정하여 기존에 2분의 1씩 부담하던 학교용지매입비를 아래와 같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비용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③ (생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④ -----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시·도별 차이는 있으나 시·도 교육청 학교 설립 계획에 따르면, 2030년 개교 예정학교까지 기존 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재원의 활용이 가능하며, 필요 시 지역별 학교용지 확보 소요 부족분은 시·도 교육청별 재정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삭 제>

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폐지(안 별표 제88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심층수법”이라 함)」 제40조⁵⁵⁾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및 산업육성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2016년

55) 「해양심층수법」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후로 부과·징수 실적이 전무함.

[최근 3년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	-	-	-	-	-
금액 (백만원)	-	-	-	-	-	-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이는 정부에서 선제적 경기침체 대응 및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16년 7월부터 부담금 부과 면제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연장해왔기 때문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2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동 부담금은 부담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동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는데⁵⁶⁾, 해당 기금의 주된 목적이 국내 수산업 종사자들의 지원과 수산업 발전 지원이기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고유의 부과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56) 「해양심층수법」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한 2017년부터 장기간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부담금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면제 이전인 2013년부터 2016년 기간동안에도 연도별 징수액이 4천만원~1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매우 작아 부담금이 가지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부담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음.

이처럼 면제기간의 지속연장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어 부담금 제도를 존치시킬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8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삭 제>

며. 「해운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안 별표 제91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해운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삭 제>

개정안은 「해운법」 제22조의2⁵⁷⁾에 따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이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이라 함)의 폐지를 전제로 동 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 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여객운임액의 2.9%)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57) 「해운법」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최근 3년간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44	144	132	144	144	132
금액 (백만원)	4,232	6,776	6,423	4,187	6,563	6,359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운항관리자는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 및 1984년 동남점보 페리호 조난사고 등 각종 대형 해상 재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여객운송 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 도입 초기 운항관리자는 선주단체인 한국해운조합 소속이었으나,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여객선박 운항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운항관리자 소속을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舊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규정하였음.

정부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폐지 필요성에 대하여 여객선 안전운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여객선 안전운항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민간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의 측면에서는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해운법」상 정부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⁵⁸⁾⁵⁹⁾⁶⁰⁾, 본 개정안과

58)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⑥ 국가는 부담금의

연계 개정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운항관리자를 돕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부담금 관련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돕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u>
<u>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 ⑤ (생략)</u> <u>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삭제></u>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은 2022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동 부담금은 부과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고 적절한 부과요율과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통해 영세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내항여객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으로 편익을 얻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킬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9) 2012년 개정 당시에는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돕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6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운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2019년 60억원, 2020년 76억원, 2021년 84억원, 2022년 61억원, 2023년 67억원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받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91. 「해운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u>	별표 <u><삭 제></u>

3.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 관련

가. 개요

개정안은 현행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부담금을 별표에서 삭제하고,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 성격의 부담금을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내용]

별표 □호	부담금명	소관 부처	제외사유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¹⁾	문체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부담금 삭제
2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산업부	전기시설 설치라는 서비스 제공 대가로 부담하는 수수료 성격으로 부담금의 요건에 부적합
9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금융위	출연금 총액을 협회에 가입된 손해보험회사 간 자발적 협의로 정하는 협회비 성격으로 부담금의 요건에 부적합

- 1) 별표 제13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0490호, 2024.10.22.)」이 개정되면서 2024.10.22.자로 타법개정되어 별표에서 삭제되었음.

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삭제 (안 별표 제13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삭 제>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⁶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이하 “골프장 부담금”이라 함)을 「부담금 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현행법상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골프장 부담금은 회원제 골프장의 안정적인 대중제 전환 지원을 통한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골프장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징수하지 않고 있음.⁶²⁾

6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부과금의 징수) ① 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62) 2021년 징수금액은 체납금 회수액임

[최근 3년간 골프장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	-	-	1	-	-
금액 (백만원)	-	-	-	7	-	-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골프장 부담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⁶³⁾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골프장 부담금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골프장 부담금을 현행법상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⁶⁴⁾되어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0490호, 2024.10.22.)」이 개정되면서 타법개정되어 동 부담금은 2024.10.22.자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되었음.

63) 2017헌가21, 2019. 12. 27., 위헌

6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2201042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별표 <u><삭 제></u>

다.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제외
(안 별표 제22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삭제>

개정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⁶⁵⁾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이라 함)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현행법상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던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해당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시설 설치공사비의 일부(호당 20만원)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5	3	-	5	3	-
금액 (백만원)	1	1	-	1	1	-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6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부담금은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음.⁶⁶⁾

이에 따르면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전기시설 설치라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공사비의 일부(20만원)를 부담하는 수수료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배전시설공사를 원하는 전국의 일반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과 내용상 동일한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부담금과 차이가 있어 보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도 2023년도 부담금평가에서 부담금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수수료로 전환하거나 현행법상 부담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음.

개정안은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을 현행법상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역시 유사한 취지의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봄.

66)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6p

다만, 현행법에 따른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을 제외하는 경우 부담금이 아닌 수수료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시 부담금’의 명칭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2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u>	별표 <u><삭 제></u>

라.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제외
(안 별표 제92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삭제>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함)」 제14조⁶⁷⁾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이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이라 함)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하여 현행법상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사원사”라 함)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임.

동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67) 「화재보험법」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의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2	12	12	12	12	12
금액 (백만원)	16,000	21,223	20,609	16,000	21,223	20,609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1970년대 초 발생한 대연각 호텔, 서울시민회관 등 대형화재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화재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재해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보험회사가 방재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설립되었음.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을 특수건물⁶⁸⁾로 지정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⁶⁹⁾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갱신 시 실시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해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⁰⁾

68) 「화재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홍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69) 건물화재손해와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해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함.

70) 「화재보험법」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 현황 및 운영재원]

구 분	내 용																														
사원사 (12개)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MG손해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주), 하나손해보험(주), NH농협손해보험(주), 신한EZ손해보험(주)																														
설치근거 (화재보험법)	- 손해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설립하여야 함 - 손해보험회사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함																														
주요업무	- 화재·폭발·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의 예방과 관련방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요율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 -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 방재관련 교육 및 연수업무 -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 사원사와의 협정에 따른 보험업무(방산업체 등 국가보안시설, 보험미가입 특수건물 및 공동주택 보험 공동인수) • 방재시험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운영재원	○ 회계상 분류 <table><tr><td colspan="2">일 반 회 계</td><td colspan="2">사옥관리특별회계</td></tr><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출 연 금 (법 제14조)</td><td>사 업 수 입</td><td>임 대 수 입</td></tr><tr><td>방재활동협회비 (영 제10조)</td><td>공동인수협회비 (영 제10조)</td><td>시험연구, 컨설팅 방재교육 등</td><td>사옥임대수수료</td></tr></table> ○ 내용상 분류 <table><tr><td>사원사 출연금</td><td colspan="5">자 체 수 입</td></tr><tr><td>방재활동협회비 (사원총회에서 결정)</td><td>+</td><td>보험업무 대행수수료</td><td>사옥임대 수수료</td><td>시험인증 연구용역</td><td>위험진단등 방재컨설팅</td><td>방재기술 실무교육</td><td>기타 수입</td></tr></table> * 사원총회 : 12개 사원회사로 구성	일 반 회 계		사옥관리특별회계						출 연 금 (법 제14조)		사 업 수 입	임 대 수 입	방재활동협회비 (영 제10조)	공동인수협회비 (영 제10조)	시험연구, 컨설팅 방재교육 등	사옥임대수수료	사원사 출연금	자 체 수 입					방재활동협회비 (사원총회에서 결정)	+	보험업무 대행수수료	사옥임대 수수료	시험인증 연구용역	위험진단등 방재컨설팅	방재기술 실무교육	기타 수입
일 반 회 계		사옥관리특별회계																													
출 연 금 (법 제14조)		사 업 수 입	임 대 수 입																												
방재활동협회비 (영 제10조)	공동인수협회비 (영 제10조)	시험연구, 컨설팅 방재교육 등	사옥임대수수료																												
사원사 출연금	자 체 수 입																														
방재활동협회비 (사원총회에서 결정)	+	보험업무 대행수수료	사옥임대 수수료	시험인증 연구용역	위험진단등 방재컨설팅	방재기술 실무교육	기타 수입																								

※ 자료: 한국화재보험협회 현황 및 업무 소개

이에 따라 현행법상 손해보험회사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한 화재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협회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⁷¹⁾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되어 부담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화재보험법 시행령」은 해당 출연금을 협회비로 명시하고 있고,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이 부담금 성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사원사가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사원총회에서 매년 방재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사원사간 자발적 협의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 따라 협회에 대한 출연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출연금 총액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각 사원사는 부담금 부과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⁷²⁾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므로

71) 「화재보험법」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①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2.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72)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①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2.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에 출연할 금액(이하 “협회비”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을 사원사의 자발적 협의에 따른 협회비 성격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반면,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이 현행법상 부담금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의 부과·징수 주체라 할 수 있는 협회가 화재예방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대상인 사원사에 필요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부과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 가입된 12개 사원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원총회에서 매년 방재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의결하고 사원사가 매월 합의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구조⁷³⁾로 부담금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어 보임.

이와 같이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그 성격이 부담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모호하므로 현행법에 따른 부담금 관리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역시 2022년도 부담금 평가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의 성격이 협회비인지 부담금인지 모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담금관리대상

수입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

73)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82p

에서 제외하고 협회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음.

개정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을 현행법상 부담금 관리대상에
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역시 유사한 취
지의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협회 및 협회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⁷⁴⁾도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
금의 성격을 판단하였을 때 협회비인지 부담금인지 모호하며, 각 기업
들이 자발적인 협의에 따라 협회비 형태로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국민에게 조세 외의 금전부담의무를
지우는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을 현행법상 부담금 관리대상
에서 제외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⁷⁵⁾ 및 부담
금운용종합보고서⁷⁶⁾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현행법에 따른 부

74)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③ 협회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의 총액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7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
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
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금운용 평가대상⁷⁷⁾에서도 제외되므로, 협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9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삭 제>

7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담금 통합 관리 관련

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 통합 관리(안 별표 제70호 및 제71호)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라 함)」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임.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8조⁷⁸⁾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함)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있음.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8조의2⁷⁹⁾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

78)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8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함)의 경우에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있음.

두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부과·징수 실적]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활용 부과금	건수	254	165	151	191	104	86
	금액 (백만원)	5,128	3,438	3,805	4,571	3,048	3,022
회수 부과금	건수	186	173	153	177	166	140
	금액 (백만원)	518	703	848	463	649	769

※ 자료: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두 부담금은 징수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동일하고, 부과대상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이나 일반적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부과목적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동일함.

- 79)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8조의2(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역시 2020년도 부담금 평가에서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의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각각 부과·징수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부담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며,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역시 유사한 취지의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현행법 별표에 따른 별개의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하면 현행법상 관리대상인 부담금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 뿐 부담금의 종류는 현행과 같이 두 가지이고, 국민의 금전지급의무는 경감되지 않으므로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7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7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별표 7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삭 제>

문의처

02)6788-5153